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박물관·미술관 우선 설립〉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39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미술관 우선 설치(안 제10조)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30.
3.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제4항).

III. 검토의견

1.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미술관 우선 설치 (안 제10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생략)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 ----- ----- ----- ----- -----광역자치 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

현 행	개 정 안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10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두도록 하고(제1항),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제2항).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 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국립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 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제4항).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²⁾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방박물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미술관 및 지방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각각 청주관과 파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지방박물관·지방미술관 현황 >

소속기관 명 (본관위치)	지방박물관·미술관명	소재 지방자치단체	설립연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공주박물관	충청남도	1973
	경주박물관	경상북도	1975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 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진주박물관·대구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소속기관 명 (본관위치)	지방박물관·미술관명	소재 지방자치단체	설립연도
	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1978
	진주박물관	경상남도	1984
	청주박물관	충청북도	1987
	전주박물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1990
	부여박물관	충청남도	1993
	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1994
	김해박물관	경상남도	1998
	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2001
	춘천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2002
	나주박물관	전라남도	2013
	익산박물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2019
	충주박물관	충청북도	2026 개관예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충청북도	2018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³⁾ 과주관	경기도	202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지역간 격차

3)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계획 중임.

가 심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수도권⁴⁾에 설립되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종사·학예 인력 수의 평균과 소장자료 수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고 전시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져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국 박물관 평균 지표 현황 >

지 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울	137	25.07	8.88	39,455	135,925
부산	32	13.63	5.09	14,195	84,790
대구	18	11.11	4.17	27,314	73,957
인천	31	10.48	4.19	7,695	87,253
광주	13	15.00	6.23	20,444	98,567
대전	16	8.94	3.19	29,996	43,783
울산	10	9.50	2.60	15,780	71,319
세종	6	5.17	3.17	42,997	50,896
경기	132	9.32	3.58	8,387	58,232
강원	97	7.89	1.74	6,636	59,832
충북	41	7.22	2.39	8,519	33,624
충남	64	12.73	4.47	14,730	118,736
전북	45	13.27	3.51	16,419	80,154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지 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전 남	65	9.98	2.78	8,810	58,324
경 북	74	13.80	4.22	14,183	73,244
경 남	76	8.75	2.75	10,629	60,937
제 주	61	14.66	1.80	26,501	147,716
수도권	300	16.63	6.06	22,503	96,711
지 방	618	11.01	3.14	14,286	78,133
총 계	918	12.84	4.09	16,971	84,204

※ 자료 :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미술관 평균 지표 현황 >

지 역	미술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 울	43	13.19	6.42	1,130	182,062
부 산	9	19.67	8.67	530	42,758
대 구	6	17.00	9.17	1,002	118,758
인 천	7	7.29	2.86	1,888	9,777
광 주	14	11.07	4.00	866	17,373
대 전	5	11.80	3.80	885	44,747
울 산	1	21.00	11.00	234	105,941
세 종	-	-	-	-	-
경 기	59	21.41	6.51	835	42,011
강 원	19	6.68	2.95	813	44,502
충 북	11	7.55	3.82	674	40,487
충 남	11	5.27	2.82	646	22,541
전 북	21	6.95	2.48	302	26,863
전 남	41	4.27	1.90	1,349	21,124
경 북	12	5.25	2.17	564	44,944
경 남	10	11.90	4.40	880	29,829
제 주	21	9.57	2.29	444	52,981
수도권	109	17.26	6.24	1,019	95,191
지 방	181	8.21	3.29	796	36,406
총 계	290	11.61	4.40	880	58,501

※ 자료 :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5,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인프라와 문화향유 기회 부족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유출과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문화기본법」 제4조⁵⁾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국가의 문화정책 목표를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 중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6)에

5)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6)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은 균형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 보장과 아울러 지속 가능성, 소장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운영되어야 하므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의 광역자치단체별 1개 이상 의무 설립 및 비수도권 우선 건립 의무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